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6. 1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3.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조례 위임 사항 반영
 - 1)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의 대부료 신설(안 제30조제4항)
 - 2024. 제정된 조례*와 동일하게 학교협동조합 대부료를 정비
 -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2024.2.16. 제정)
 - ※ 대부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임
 -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 조건 완화(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62조제1항)

납부조건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기준금액		50만원 초과
횟 수	‘연 6회의 범위’→ ‘연 12회의 범위’로 확대	1년 2회 이내 분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34조제1항 등)

1)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안) 제34조제1항	· 영 제35조제2항제1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
안) 제37조제2항	· 영 제14조제7항	· 영 제14조제8항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2023. 8. 23)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 하향과 횟수 확대’에 관한 사항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⑧ 법 제22조 제2항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3. 8. 22.>

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재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유재산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개정 주요 내용 조문별 검토의견

- 개정 주요 내용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 안 제30조제4항에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규정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함. 이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중에 하나였던 ‘시설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41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 1. 24.)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의 시 학교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에 있어서 현행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충돌 및 행정 처리 시 혼돈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1.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 제1항 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하며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또한, 안 제37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행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 62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액을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년 2회 이내에 분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에 관한 행정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 안 제34조제1항제1호의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안 제37조제2항의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안 제60조의 '제49조부터 제59조'를 '제49조, 제51조'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수정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범위와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가 전체적으로 법체계에 부합함으로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